

이사회규정

제 정 1989. 04. 01.
개 정 1990. 12. 12.
개 정 1991. 11. 22.
개 정 1993. 05. 26.
1994. 08. 10.(301부칙)
개 정 1998. 02. 17.
개 정 2001. 05. 04.
개 정 2001. 12. 27.
개 정 2003. 01. 09.
개 정 2003. 06. 25.
개 정 2004. 03. 26.
개 정 2005. 03. 16.
개 정 2006. 04. 19.
개 정 2009. 02. 11.
개 정 2010. 03. 31.
개 정 2012. 07. 18.
개 정 2013. 03. 13.
개 정 2014. 03. 20.
개 정 2015. 03. 19.
개 정 2016. 02. 18.
개 정 2019. 06. 13.
개 정 2020. 09. 22.
개 정 2022. 02. 24.
개 정 2023. 12. 07.

제1조(목적) 이 규정은 주식회사 케이티앤지(이하 “회사” 라 한다) 이사회 의 구성 과 운영 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<개정 2003.01.09, 2022.2.24>

제2조(적용범위) 회사의 이사회에 관한 사항은 관계 법령 또는 주식회사 케이티앤지 정관(이하 “정관” 이라 한다)에서 정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이 규정에 따른다. <개정 2019.06.13, 2022.2.24>

제3조(기능) 이사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·결의한다.

1. 관계 법령 및 정관에서 정한 사항
2. 중요한 자산의 매입·양도·처분
3. 대규모 자금의 차입
4. 이사의 선임·해임
5. 그 밖에 회사의 업무집행에 관한 중요사항 <개정 2009.02.11, 2019.06.13, 2022.2.24>

제4조(이사의 의무) ① 이사는 이사회에서 정한 이사윤리강령을 준수하고 회사와 주주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 최상의 의사결정과 업무집행에 노력하여야 한다. <개정 2001.12.27>

② 이사는 재직 중은 물론 퇴임 후에도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. <개정 2022.2.24>

③ 이사는 의무위반에 따른 손해를 회사에 배상하여야 한다.

제5조(구성) ① 이사회는 사장을 포함한 사내이사와 사외이사로 구성한다. <개정 2001.05.04>

② 관계 법령 또는 정관 등에 따라 사장 또는 사내이사가 결의에 참여할 수 없는 경우에는 사장 또는 사내이사를 제외한 이사로 이사회를 구성할 수 있다. <개정 2004.03.26, 2019.06.13, 2022.2.24>

③ 제2항에 따라 사장 또는 사내이사의 참여가 제한되는 이사회인 경우에는 사장 또는 사내이사를 재적이사의 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. <개정 2022.2.24>

④ 관계 법령 또는 정관 등에 따라 사외이사가 결의에 참여할 수 없는 경우 사외이사는 의결정족수를 산정하기 위한 출석이사의 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. 다만, 의사정족수를 산정하기 위한 출석이사의 수에는 산입한다. <신설 2010.03.31> <개정 2019.06.13, 2022.2.24>

⑤ 이사회는 이사회의 회무 처리를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며, 간사는 이사회의 업무를 관장하는 부서의 장으로 한다. (제4항 삭제 2001.12.27, 제4항에서 이동 2010.03.31) <개정 2022.2.24>

제6조(의장) ① 이사회의 의장(이하 “이사회 의장”이라 한다)은 사외이사 중에서 이사회의 결의로 선임한다. <개정 2010.03.31, 2022.2.24>

② 삭제 <2010.03.31> <개정 2001.05.04, 2003.06.25, 2004.03.26>

③ 이사회 의장의 임기는 1년으로 하며 연임하지 아니한다. <신설 2010.03.31>

④ 이사회 의장은 회의를 주재하고 의사를 조율하며, 의장이 이사회에 참석할 수 없는 경우에는 사외이사 중 선임자, 연장자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. <신설 2010.03.31>

제7조(부의사항) ① 이사회에서 심의·결의하는 사항은 제2항 각 호와 제15조 제1항의 사항으로 한다. <개정 2001.05.04, 2003.06.25, 2005.03.16, 2009.02.11, 2022.2.24>

② 이사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제외하고는 심의·결의할 사항에 관한 권한을 정관 제34조의2에 따른 이사회 내 위원회(이하 “위원회”라 한다) 중 해당 위원회에 위임한다. <개정 2009.02.11,

2012.07.18, 2019.06.13, 2020.09.22, 2022.2.24>

1. 주주총회의 소집과 이에 제출할 의안

가. 주주총회의 소집

나. 영업보고서 및 재무제표의 승인

다. 정관의 변경

라. 회사의 해산, 합병, 회사의 계속

마. 회사의 영업 전부 또는 중요한 일부의 양도 및 회사의 영업에
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다른 회사의 영업 전부 또는 일부의 양수

바. 그 밖에 주주총회에 부의할 의안

2. 재무에 관한 사항

가. 주식발행에 관한 사항

나. 전환사채, 신주인수권부사채를 포함한 사채의 발행에 관한 사항

다. 예산 및 결산의 승인

라. 준비금의 자본금 전입

마. 자기주식의 취득, 처분, 소각에 관한 사항

바. 자본금 5% 이상의 타법인 출자 또는 출자지분의 처분

사. 자본금 5% 이상의 해외직접투자 및 해외법인의 현지금융에 대한
지급보증

아. 자본금 10% 이상의 신규시설투자, 시설증설 또는 별도
공장의 신설

자. 자본금 10% 이상의 고정자산 취득, 처분

차. 자본금 5% 이상의 타인을 위한 담보제공 및 채무보증, 채무인수,
대여, 채무면제

카. 자기자본의 25% 이상의 차입

타. 10억원을 초과하는 규모의 공익활동

3. 중요 경영에 관한 사항

- 가. 중장기 종합경영계획의 승인
- 나. 기업이념, 비전, 철학 등 기업정체성에 관한 사항
- 다. 중요한 CI 제정 및 변경
- 라. 이사윤리행동 강령 및 기업윤리정책 입안에 관한 사항
- 마. 이사회 의장의 선임 <신설 2010.03.31>
- 바. 이사회 내 위원회 위원의 선임
- 사. 사외이사의 보상 등에 관한 사항
- 아.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의 대규모 내부거래(거래금액 50억원 이상인 거래)에 관한 사항
- 자. 이사회규정 변경에 관한 사항
- 차. 감사위원회운영규정 변경에 관한 사항
- 카. 준법통제기준 수립·변경 및 준법지원인의 임면

4. 이사에 관한 사항

- 가. 사내이사 경업 승인
- 나. 상법에 따른 이사의 회사 사업기회 유용에 대한 승인
- 다. 상법에 따른 이사 등과 회사 간의 거래 승인

5. 그 밖에 관계 법령 및 정관상 이사회 결의가 필요하거나 이사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

③ 사장을 포함한 사내이사가 참여할 수 없는 이사의 심의·결의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. 다만, 제3호에 따른 동의에는 사장이 심의·결의에 참여할 수 있다. <개정 2003.06.25, 2004.03.26, 2005.03.16, 2019.06.13, 2022.2.24>

- 1. 사장후보추천위원회의 구성
- 2. 사장과 체결한 경영계약 이행여부의 평가와 해임건의에 관한 사항

3. 사장 또는 사장후보의 사내이사후보 추천과 사장의 사내이사 해임건의에 대한 동의

4. 사장과 사내이사의 보수 및 퇴직금에 관한 사항

5. 삭제 <신설 2022.2.24, 삭제 2023.12.07>

6. 그 밖에 관계 법령·정관 및 사장의 경영계약서 등에서 규정한 사항

④ 이사회는 제2항 각 호의 결의사항 중 이사회의 결의로 정한 범위 내의 사항을 사장에게 위임하여 결정·집행하도록 할 수 있다.

<개정 2019.06.13, 2022.2.24>

⑤ 사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한다. <개정 2001.05.04, 2022.2.24>

1. 중간결산 결과

2. 이사회가 사장에게 위임한 사항 중 중요 사항

3. 최근 경영상황

4. 그 밖에 사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이사회에서 요구한 사항

⑥ 제2항 각 호의 결의사항 중 예산 승인시에 포함된 사항이나 중장기 경영계획 등에 의해 이사회의 결정이 있었던 사항은 제외한다.

<신설 2009.02.11> <개정 2019.06.13, 2022.2.24>

[본조개정 2006.04.19]

제8조(부의절차) ① 이사회에 부의할 안건은 결의사항, 보고사항 및 협의사항으로 구분한다. <개정 2003.06.25, 2005.03.16, 2009.02.11, 2022.2.24>

② 이사회에 제1항에 따른 안건을 부의하려는 이사는 제9조 제2항이 규정하는 회의개최일 9일전까지 해당 안건을 간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 다만, 긴급을 요하는 등의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

그러하지 아니하다. <개정 2022.2.24>

제9조(소집절차) ① 이사회는 정기이사회와 임시이사회로 구분하여 의장이 소집하며, 정기이사회는 분기 1회 이상 개최하고 임시이사회는 긴급한 사안이 있는 경우 각 이사 또는 감사위원회의 요구에 의하여 개최한다. <개정 2001.12.27, 2003.06.25, 2006.04.19, 2012.07.18>

② 간사는 회의일 3일 전까지 각 이사에게 서면(전자우편 또는 팩스를 포함한다) 또는 구두로 소집내용을 통보하고 확인절차를 거쳐야 한다. 다만, 이사 전원의 동의가 있을 때에는 소집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. <개정 2001.5.4, 2003.06.25, 2006.04.19, 2022.2.24>

제10조(의사 및 결의) ① 이사회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의한다. 다만, 사장 및 사내이사의 해임건의에 대한 이사회 결의는 사외이사 재적원수의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결의하고, 상법에 규정된 회사의 사업계획 유용 및 이사 등과 회사 간의 거래에 대한 이사회 결의는 재적이사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결의한다. <개정 2012.07.18, 2022.2.24>

② 이사회는 이사의 전부 또는 일부가 직접 회의에 출석하지 아니하고 모든 이사가 음성을 동시에 송·수신하는 통신수단에 의하여 결의에 참가하는 것을 허용할 수 있다. 이 경우 해당 이사는 이사회에 직접 출석한 것으로 본다. <개정 2012.07.18, 2022.2.24>

③ 이사회에 부의된 의안에 대한 제안설명 및 질의에 대한 답변은 해당 안건의 담당 부서장이 하도록 한다. <개정 2010.03.31, 2022.2.24>

④ 이사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관계직원을 이사회에 출석시켜 의견을 진술하게 할 수 있다. <개정 2022.2.24>

[본조개정 2004.03.26]

제11조(의사록) 간사는 이사회의 의사에 관하여 그 안건, 경과와 결과 및 반대하는 자와 반대 이유를 기록한 의사록을 작성하여야 하며, 출석한 이사의 기명날인 또는 서명을 받아 비치·관리하여야 한다. <개정 2001.05.04, 2003.06.25, 2022.2.24>

제12조(결의서 작성·통보) ① 이사회에 부의된 안건이 결의된 경우에는 간사는 별지 서식의 결의서를 작성하고 출석한 이사의 기명날인 또는 서명을 받아야 한다. <개정 2003.06.25, 2005.03.16, 2022.2.24>

② 간사는 이사회의 결의사항을 관계부서에 통지하여야 한다. <개정 2003.06.25, 2022.2.24>

제13조(자료요구권(개정2001.05.04)) ① 사외이사는 최적의 의사결정 수행을 위하여 사내이사 및 경영임원의 직무와 관련한 필요자료에 대하여 회사의 업무수행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. 이 경우 회사는 상당한 기간 내에 그 자료를 제공하여야 한다. <개정 2003.01.09, 2006.04.19, 2022.2.24>

② 사외이사는 사장의 경영실적평가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회사의 업무수행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 확인조사 및 자료요구를 할 수 있다. 이 경우 회사는 상당한 기간 내에 그 자료를 제공하여야 한다. <개정 2006.04.19, 2022.2.24>

제14조(자문) ① 사외이사는 그가 속한 해당 위원회의 결의로써 회사의 비용으로 외부전문가의 자문을 받을 수 있다. <개정 2006.04.19, 2009.02.11, 2022.2.24>

② 사외이사가 제1항에 따라 외부전문가의 자문을 받은 경우에는 자문의 배경, 내용, 자문 후 취한 조치 및 그 효과를 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한다. <개정 2022.2.24>

[본조신설 2003.06.25]

제15조(위원회) ① 정관 제34조의2에 따라 이사회의 결의로 이사회 내에 둘 수 있는 위원회의 구성과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. <개정 2006.04.19, 2009.02.11, 2012.07.18, 2014.03.20, 2022.2.24, 2023.12.7> [전면개정 2010.03.31, 2019.06.13]

1. 지배구조위원회(3인 이상의 사외이사로 구성한다)

가. 이사회 및 이사회 내 위원회의 운영기준과 그 개선에 관한 사항
나. 정관, 이사회규정, 기업지배구조헌장 등 지배구조관련 규정 제·개정안 사전심의

다. 사장 승계계획의 수립 및 운영에 관한 사항

라. 사장후보 육성프로그램의 수립 및 운영에 관한 사항

마. 사장후보자군 구성

바. 사장후보 심사대상자 물색 및 추천

사. 사외이사로 구성된 이사회에 대한 사장후보 심사기준 제안

아.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에 대한 사외이사후보 심사기준 제안

자. 사내이사후보 심사기준 결정 및 자격심사

차. 그 밖에 지배구조 개선과 관련하여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

2. 평가보상위원회(3인 이상의 사외이사로 구성한다)

- 가. 경영임원의 보수 및 퇴직금에 관한 규정과 직원의 퇴직금에 관한 규정
- 나. 예산의 증가를 수반하는 직원의 보수에 관한 규정
- 다. 사장후보와 체결할 경영목표 등에 대한 계약조건 결정
- 라. 사장과 사내이사의 보수 및 퇴직금에 관한 사항 사전심의
- 마. 사장의 요청에 의한 경영계약서상의 경영평가지표 및 가중치의 변경에 대한 결의
- 바. 사장의 경영평가 및 보상에 대한 결의
- 사. 사장의 계량 및 비계량지표 실적의 점검 및 조정

3. 경영위원회(2인 이상의 사내이사로 구성한다)

- 가. 종업원·소비자 등 회사의 주요 이해관계자에 관한 중요한 사항의 결의
- 나. 법적·제도적 주요 경영리스크 점검 및 대책 수립
- 다. 지점의 설치·이전 및 폐지에 대한 결의
- 라. 500억원 이상의 고정자산의 취득과 처분. 다만, 자본금의 10% 이상의 고정자산의 취득과 처분을 제외한다.
- 마. 500억원 이상의 신규 시설투자, 시설증설 또는 별도 공장의 신설. 다만, 자본금의 10%이상의 신규 시설투자, 시설증설 또는 별도 공장의 신설을 제외한다.
- 바. 200억원 이상의 타법인 출자 및 출자지분의 처분. 다만, 자본금의 5%이상의 타법인 출자 및 출자지분의 처분을 제외한다.
- 사. 200억원 이상의 해외직접투자 및 해외법인의 현지금융에 대한 지급보증. 다만, 자본금의 5% 이상의 해외직접투자 및 해외법인의 현지금융에 대한 지급보증을 제외한다.
- 아. 100억원을 초과하는 타인을 위한 담보제공 및 채무보증, 채무인수, 대여, 채무면제. 다만, 자본금의 5%이상의 타인을

위한 담보제공 및 채무보증, 채무인수, 대여, 채무면제를 제외한다.
 자. 자기자본의 10% 이상의 차입. 다만, 자기자본의 25% 이상의 차입을 제외한다.

차. 주식 관련 명의개서 대리인 선임 및 기준일 설정에 관한 사항
 카. 주요 성장사업의 발굴

타. 투자사업에 대한 사후점검 및 리스크 관리

파. 사회공헌활동의 발굴 및 예산 승인시 포함되지 않은 5억원 초과 10억원 이하의 사회공헌활동

4. 지속가능경영위원회(3인 이상의 이사로 구성하되, 위원의 과반수는 사외이사로 한다) <신설 2022.2.24, 개정 2023.12.07>

가. 지속가능경영 기본 정책 및 전략 수립

나. 지속가능경영 중장기 목표의 설정

다. 그 밖에 이사회에서 위임을 받거나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

② 이사회는 제1항 각 호의 위원회 외에 특별히 전문성을 필요로 하거나 신속한 의사결정이 필요한 경우 한시적으로 임시위원회를 운영할 수 있다. <개정 2022.2.24>

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위원회의 사전심의 사항 중 사안이 경미하거나 긴급을 요하는 경우 사장은 위원회의 사전심의를 생략하고 이사회에 직접 의안을 상정할 수 있다. 다만, 그 이유가 타당하지 않은 때에는 이사회는 위원회의 사전심의를 받도록 할 수 있다. <개정 2022.2.24>

④ <삭제> 2019.06.13

⑤ 제1항 제1호에 따른 지배구조위원회는 사내이사 후보 자격심사기준을 정하여 사장 또는 사장후보가 추천한 사내이사 후보에 대해서만 자격을 심사한 후 사장 또는 사장후보에게 자격적합자만을

통보한다. <개정 2016.02.18, 2019.06.13, 2022.2.24>

⑥ 제1항 각 호의 결의사항 중 예산 승인시에 포함된 사항이나 중장기 경영계획 등에 의해 이사회 결정이 있었던 사항은 제외한다. <신설 2009.02.11> <개정 2022.2.24>

[본조개정 2005.03.16]

제16조(위원회 운영<신설2001.05.04>) ① 위원회 위원장의 임기는 1년으로 하며 소속 위원들의 호선으로 선임한다. <개정 2001.12.27, 2005.03.16, 2006.04.19, 2010.03.31, 2019.06.13, 2022.2.24>

② 정관 제32조에 따른 사장후보추천위원회와 정관 제34조의5에 따른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(이하 “정관상의 위원회”라 한다) 및 위원회의 위원장은 대표이사 또는 소속 위원의 요청에 의하여 위원회를 소집하고 회무를 총괄한다. 다만, 위원장이 참석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정관상의 위원회 또는 위원회에 소속된 사외이사 중 선임자, 연장자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. <개정 2003.06.25, 2016.02.18, 2022.2.24>

③ 정관상의 위원회 및 위원회는 결의된 사항을 결의일부터 3일이내에 각 이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. 이 경우 결의사항을 통지받은 이사는 이사회 소집을 요구할 수 있으며, 이사회는 위원회가 결의한 사항에 대하여 다시 결의할 수 있다. <신설 2001.12.27> <개정 2003.06.25, 2022.2.24>

④ 제3항 후단에 따른 이사회 소집요구는 이사가 통지를 받은 날부터 3일이내에 하여야 한다. <신설 2001.12.27> <개정 2003.06.25, 2022.2.24>

⑤ 위원회는 위임받은 결의사항에 대하여 위원회의 결의나 위원장의

직권으로 이사회에서 결의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이사회에 회부할 수 있다. 이 경우에도 사전심의의 결과는 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한다. <신설 2001.12.27> <개정 2022.2.24>

⑥ 정관상의 위원회 및 위원회의 부의절차와 소집절차, 의사 및 결의와 의사록 작성에 대해서는 제8조, 제9조제2항, 제10조 및 제11조를 준용한다. <개정 2001.12.27, 2003.06.25, 2022.2.24>

⑦ 이사회는 경영위원회의 보좌기구로서 경영관리위원회를 설치·운영할 수 있다. <신설 2019.06.13> <개정 2022.2.24>

제17조(사외이사에 대한 평가) 이사회는 그 결의로 사외이사에 대한 평가 및 이사회 활동에 대한 자체 평가를 할 수 있다. <개정 2022.2.24>
[본조신설 2003.06.25]

제18조(사외이사의 정기적인 회의 개최 등) ① 회사의 경영전반에 관한 의견교환 등을 위하여 사외이사만이 참석하는 회의를 반기별로 1회 개최하며, 긴급히 논의할 사안이 있는 경우에는 사외이사의 요구에 의하여 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. <개정 2022.2.24>

② 삭제 <2010.03.31>

③ 이사회 의장은 회의를 소집·주관하며, 필요시 회사에 자료제출 등을 요구할 수 있다. 이 경우 회사는 이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여야 하며, 회의 개최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하여야 한다. <개정 2010.03.31, 2022.2.24>

[본조신설 2003.6.25]

제19조(경비 지급) ① 회사는 사외이사에게 업무수행에 필요한 경비를

지급할 수 있다. <개정 2001.05.04, 2022.2.24>

② 제1항에 따른 경비의 지급방법과 금액은 별도의 규정에 따른다.

<개정 2010.03.31, 2022.2.24>

부 칙<1989.04.01>

이 규정은 1989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<1990.12.12>

이 규정은 1990년 12월 12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<1991.11.22>

이 규정은 1991년 11월 22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<1993.05.26>

이 규정은 1993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<1998.02.17>

이 규정은 1998년 2월 17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<2001.05.04>

이 규정은 2001년 5월 4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<2001.12.27>

이 규정은 2001년 12월 21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<2003.01.09>

이 규정은 2003년 1월 10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<2003.06.25>

이 규정은 2003년 6월 25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<2004.03.26>

이 규정은 2004년 3월 26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<2005.03.16>

이 규정은 2005년 3월 16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<2006.04.19>

① (시행일) 이 규정은 이사회의 결의일부터 시행한다.

② (다른 세칙의 폐지) 이사회규정시행세칙은 이 규정의 시행일로부터 폐지한다.

부 칙<2009.02.11>

이 규정은 이사회의 결의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<2010.03.31>

이 규정은 이사회의 결의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<2012.07.18>

이 규정은 이사회의 결의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<2013.03.13>

이 규정은 이사회 결의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<2014.03.20>

이 규정은 이사회 결의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<2015.03.19>

이 규정은 이사회 결의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<2016.02.18>

이 규정은 이사회 결의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<2019.06.13>

이 규정은 이사회 결의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<2020.09.22>

이 규정은 이사회 결의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<2022.02.24>

이 규정은 이사회 결의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<2023.12.07>

이 규정은 이사회 결의일부터 시행한다.

[별지 서식] <개정 2022.2.24>

제 차 이 사 회 결 의 서

결 의 자	이 사	이 사	이 사	이 사	이 사	이 사	이 사	의 장
	이 사	이 사	이 사	이 사	이 사	이 사	이 사	
결의일자		20... (: ~ :)			장 소			
작 성 자								
의안번호	제 안 자	제 목						결 의 결 과
결 의 사 항								

210mm×298mm(인쇄용지 70g/m²)